

전국 대표번호 서비스 신청 유의사항

유의사항

- 아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이 해당될 경우 당사는 번호를 회수(직권해지)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서의 기재 내용 또는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
 - 나.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 및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 - 다. 계약자 외 제3자의 이용 및 등록된 용도 이외의 번호 사용의 경우
 - 라.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로부터 제재를 요청 받은 경우
 - 마. 부당한 거래를 목적으로 번호자원을 매매하거나 매매하려고 하는 경우
 - 바. 미납에 따른 이용중지 이후 1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
 - 사. 최근 3개월 평균 착신통화량이 일 평균 1건 미만인 회선의 경우
 - 아. 사용자 요청에 따른 일시 정지가 1회 3개월 이상인 경우, 또는 연간 2회 이상
 - ▷일시정지를 신청한 경우(최초 개통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시 정지는 불가함)
 - ※ 상기 2항에 따른 강제 해지 시에도 고객의 귀책사유에 따라 할인반환금이 부과됩니다. [할인반환금 = (등급별 기본료-실납부요금) X 사용월수]
 - ▷사용기간 약정할인율 : 1년 미만 0%, 1년 이상 10%, 2년 이상 30%, 3년 이상 40% 적용
- ARS서비스 자체 제공 시 운영지침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 - 가. ARS서비스 제공에 있어 상담원 연결기능을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대기시간을 최소화합니다.
 - 나. ARS는 중요메뉴 중심으로 단순하게 구성, 상담원 0번, 되돌아가기#, 다시 듣기* 를 운영합니다
 - 다. ARS제공자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분리과금 체계를 이용토록 노력합니다.
 - 라.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따라 해당 대표번호의 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본 신청인은 세종네트웍스(주)의 전화기본약관 및 전화부가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본 서비스를 신청합니다.	신청일	20	년	월	일
	신청인				